

영국 보험법 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의 개혁동향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신 건 훈*

-
- I. 서 론
 - II. 영국 보험법 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의 개관
 - III.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의 문제점 및 개혁동향
 - IV. 결 론
-

주제어 : 피보험이익, 법률위원회, 영국 보험법 개혁

I. 서 론

법률 상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즉, 단순한 의미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목적의 보존에 기인하여 이익을 얻거나, 파손에 기인하여 손해를 입어야만

*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한다. 보험법 상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는 그 강제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보험법 상 아주 독특한 법률영역을 형성한다.

영국 보험법 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은 18세기의 판례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수백 년 동안 다양한 제정법이 제정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정법 및 판례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원칙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수백 년 동안 법률의 일관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행 법원칙을 규명하는 것이 쉬운 과업은 아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법원칙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원칙과 실무관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관한 현행 영국의 보험법원칙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혼란 및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보험계약법을 개정하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다양한 보험법원칙의 문제점 및 개혁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결과로서 2008년에 쟁점보고서를 발표하였고,¹⁾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한 후 2011년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영국 보험법 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입법의 역사 및 법원칙을 개관한 후, 영국 법률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 및 2011년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법원칙의 개혁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영국 법률위원회가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의 개혁권고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법원칙에 대한 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을 미리 검토해 본다는데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영국 보험법 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의 개관

1. 영국 보험법 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입법의 역사

1) English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Insurable Interest*, Issues Paper 4, 2008. 1. 14(이하에서는 IP 4라고 칭함).

2) English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Post Contract Law and Other Issues*, Consultation Paper No. 201, 2011(이하에서는 LCCP 201이라고 칭함).

1) 1745년 해상보험법

18세기 중반까지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영국 법률은 다소 불분명한 상태였다. 초기의 영국 판례법에서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영국 법원은 피보험이익의 존재 없이 강제력을 갖는 보험계약, 즉 일종의 도박보험계약 체결이 계약당사자의 자유라는 견해를 취하였기 때문에 18세기 중반까지 해상보험 및 생명보험이 도박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³⁾

당시 계약당사자가 강제력을 갖는 도박보험계약의 체결을 의도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증권에 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구들이 개발되었다. 즉, “피보험이익의 유무를 불문함”(interest or no interest)이란 문언이 해상보험증권에 삽입되기도 하였고, 보험증권 그 자체로써 “피보험이익의 결정적인 증거”(policy proof of interest)⁴⁾라는 계약조항에 기초하여 보험증권이 발행되기도 하였으며, “(보험자에게) 구조물에 대한 권리가 없음”(without benefit of salvage)라는 문언은 실손보상원칙과 관련한 보험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언으로 해석되었다.

18세기 중반,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 사이에 이해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영국 내에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의회가 개입하게 되었다. 즉, 영국 의회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 사이에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법률 상 명시하기 위하여 1745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745)을 제정하였다.⁵⁾

이 법률의 제정은 18세기 중반 도박보험계약이 다양한 해약을 초래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법률의 서문에서는 “경험 상 이해관계의 유무 또

3) MIA 1906 제4조 (2)항 ; LCCP 201, p. 104.

4) 일명 “policy proof of interest(PPI)” 조항으로서 보험증권의 소지 자체가 피보험이익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H. Bennett, *The Law of Marine Insurance*, 2nd edn., Oxford, 2006, p. 68).

5) 1745년 해상보험법의 제정 이전까지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항해와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한다는 법률 상 요구사항은 존재하지 않았다(Kyriaki Noussia, “Insurable Interest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 Modern Commercial Needs Versus Tradition”, *Journal of Maritime Law & Commerce*, Vol. 39, No. 1, 2008. 1, p. 82).

는 보험증권을 제외한 이해관계의 입증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다수의 폐해가 창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선박 및 화물이 사기적인 방법으로 멸실되거나, 파괴되었다”라고 규정하고, 도박보험계약이 초래하는 3가지 해약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동일한 항해에 대하여 무한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가능케 하는 관행은 보험사기를 조장한다. 둘째, 도박보험계약은 금지된 항해사업에 대하여 보험을 가장한 도박수단으로 활용된다. 셋째, 보다 일반적으로 보험제도가 도박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보험업계의 신뢰도를 하락시킨다는 것이었다.⁶⁾

이 법률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없거나, 또는 도박의 수단으로 체결된 일체의 보험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PPI 조항에 기초하여 작성된 보험증권도 무효화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⁷⁾ 영국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에 관한 요구사항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최초의 제정법인 1745년 법률은 보험이 도박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도덕적 위태를 초래하는 우려의 산물로서 발전되었고,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도입되었다.⁸⁾

한편 1745년 법률에 의하여 일체의 도박보험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적국의 선박, 유럽이나 미국의 항구로부터 출항한 선박의 화물 또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지배 하에 있는 도시를 약탈하는 영국 자본의 민간무장선⁹⁾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도박보험계약이 허용되었다.¹⁰⁾ 왜냐하면 외국적 선박 및 당해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해외에서 초청하여 영국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이다.¹¹⁾ 그러나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은 계속해서 실손보상계약으로

6) H. Bennett, *op. cit.*, p. 68.

7) LCCP 201, p. 105.

8) IP 4, p. 2 및 p. 6.

9) 전시에 정부로부터 적선의 포획 임무를 허가 받은 민간무장선을 의미한다.

10) N. Legh-Jones, "The Elements of Insurance Interest in Marine Insurance Law",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Vol. 2)(ed. by R. Thomas), 2002, para. 4.6 참조.

11) *Thellusson v. Fletcher* (1780) 1 Doug. 315 ; *Lucena v. Craufurd* (1803) 2 Bos. & Pul. (NR) 269, 322.

서 간주되었고, 피보험이익을 요하였다.

2) 1774년 생명보험법

MIA 1745의 제정 이후, 약 30여년 동안 당시 영국의 국왕이나 총리 등과 같은 사회적인 저명인사의 생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생명보험의 도박화가 일상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보험관행의 폐해를 억제하려는 수단으로서 1774년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서문에는 “경험 상 피보험자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생명 또는 기타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해한 형태의 도박을 도입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하여 유효한 이해관계 없이 체결되는 생명보험계약이 금지되었으며,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화된다고 선언되었다.

3) 1788년 해상보험법

1788년 제정된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788)에서는 유효한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를 보다 쉽게 식별하기 위하여 일체 이해관계자의 성명을 보험증권에 삽입하도록 강제하였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일체의 선박 또는 일체의 화물, 상품, 소지품 또는 기타 재산에 관한 일체의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됨으로써, 법률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상보험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¹²⁾

해상보험에 관한 한, 이 법률은 MIA 1906으로 대체됨으로써, 1906년 이후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갖지 못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화물, 상품, 소지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비해상보험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4) 1845년 사행법

19세기 영국 사회는 사행에 대하여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법원은 사행계약의 강제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당시의 이러한 사회적

12) *Ibid.*, p. 106.

정서는 1845년 사행법(Gaming Act 1845)의 제정으로 이어졌고, 동 법 제18조에서는 “구두에 의해서든 서면에 의해서든 도박이나 사행 목적의 일체 계약 또는 합의는 무효이고, 일체의 사행계약 하에서 획득한 금전 또는 귀중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소송도 법원에 제소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행계약은 강제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었다.¹³⁾

사행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제외하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제18조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 사이에 특정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일체의 보험계약을 강제불가능한 계약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제18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을 간접적으로 창출하였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계약은 사행계약이며, 따라서 강제불가능한 계약으로 취급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5) 1906년 해상보험법

MIA 1906의 발효로 인하여 MIA 1745 및 MIA 1788이 폐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동 법 제4조 (1)항에서는 “사행(gaming) 또는 도박(wagering)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일체의 해상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규정은 계약체결시점에 관계된다. 제4조 (2)항 (a)호에서는 “피보험자가 본 법에 의하여 정의된 피보험이익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피보험이익을 취득할 기대감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해상보험계약은 사행 또는 도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피보험이익을 가졌는지 여부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피보험이익을 취득하려는 기대감을 가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계약과 도박계약의 경계선을 설정한다. 더욱이 이 조항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면제하거나 부재를 전제를 전체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도박계약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¹⁴⁾

제5조에서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부분적인 정의를 제공한다. 제5조 (1)항에서

13) *Ibid.*

14) H. Bennett, *op. cit.*, p. 70.

는 “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일체의 자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서, (2)항에서 피보험이익으로 간주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일부 특정례를 제공한다. 즉, “특히 어떤 자가 위험에 처한 해상사업이나 피보험재산에 대하여 보통법 또는 형평법 상 이해관계를 갖고, 그 결과 피보험재산의 안전 또는 예정기간 내 도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거나, 피보험재산의 멸실, 손상 또는 도착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또는 피보험재산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상사업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제정법 상 피보험이익에 대한 유일한 정의이지만,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하는 3가지 사항이 존재한다.¹⁵⁾ 첫째, 이러한 정의는 해상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MIA 1906 상 다수의 규정이 여타 유형의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반면, 이 규정은 해상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둘째, 이러한 정의가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에 대한 망라적인 정의는 아니다. 즉, 이 정의의 범주에 포함되는 당사자는 피보험이익을 갖는 자라고 언급할 수 있으나, 이 리스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당사자가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한 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셋째, 이 정의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광범위한 정의이다.

6) 1909년 해상보험(도박보험계약)법

MIA 1906이 제정된 지 3년 후, 영국 의회는 피보험이익의 존재 없이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 결과 1909년 해상보험(도박보험계약)법(Marine Insurance (Gambling Policies) Act 1909)이 제정되었고, 법률 상 보험을 가장한 도박행위는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써 처벌이 가능한 형사범죄라고 규정하였다.¹⁶⁾ MIA 1906 제4조에 의하면 도박보험계약의 경우에 당해 계약은 무효화되는데 그치지만, 1909년 법률은 도박보험계약에 대하여 불법성을 부여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이 결여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¹⁷⁾

15) LCCP 201, p. 107.

16) IP 4, p. 8.

7) 2005년 도박법

1909년 이후, 제정법 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의 변화는 2005년 도박법(Gambling Act 2005)의 제정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함으로써, 일부 인가된 특정 유형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이 법률의 발효로 인하여 1845년 사행법 제18조는 폐기되었다.¹⁸⁾ 이 법률 상 “일개 계약이 도박과 관계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계약의 강제력이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었고,¹⁹⁾ 이 조항은 2007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²⁰⁾

이 법률 하에서 사행 또는 도박 목적의 계약은 강제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의 강제력에 관한 한 손해보험계약과 사행계약 사이에 형식적인 구분은 사라짐으로써, 160여년 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 즉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가 보험법 상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재차 제기되었다.²¹⁾

한편 IP 4에서 법률위원회는 잉글랜드에서 비해상손해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져야만 한다는 요구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원칙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과 관련하여 실제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2005년 법률이 간접적으로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를 폐기하는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²²⁾

법률위원회의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다수의 비평가는 2005년 법률이 보험

17) H. Bennett, *op. cit.*, p. 73.

18) Gambling Act 2005 제334조 (1)항 (c)호.

19) Gambling Act 2005 제335조.

20) SI 2006 No. 3272 ; SI 2007 No. 1157.

21)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실손보상원칙으로 인하여 2005년 법률의 발효는 묵시적으로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를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R. Merkin, "Reforming Insurance Law : Is there a Case for Reverse Transportation?", *A Report for the English and Scottish Law Commissions on the Australian Experience of Insurance Law Reform*, 2006 ; Kyriaki Noussia, *op. cit.*, p. 81).

22) IP 4, pp. 34~35 참조.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의도되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동 법률의 적용범주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로이즈 시장협회(Lloyd's Market Association)는 “보험계약법에 대한 2005년 도박법의 영향은 기껏해야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 동 법률은 기업보험 또는 개인보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2005년 법률 상 도박이나 투기 등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보험계약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²³⁾ 한편 Mark Templeman QC는 “MIA 1906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계약이 단지 도박에 관계된다는 이유로 인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서양속에 의거하여 무효화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로이즈 시장협회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였다.²⁴⁾

2. 손해보험과 관련한 영국 판례법 상 피보험이익의 정의

1) 고전적인 정의(협소한 정의)

영국에서 해상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익’(interest)이라는 개념은 17세기 중엽의 청교도혁명(1640~1660) 이후 “이익의 유무를 불문함”(interest or not interest)이란 조항이 해상보험증권에 삽입되던 시기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²⁵⁾ 이후 18세기 후반부터 이익이라는 용어 앞에 ‘insurable’이란 수식어가 추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이익의 관념에 대한 변화도 초래되어 비로소 보험에 부보되는 것은 이익, 즉 보험계약의 대상 또는 목적이 되는 것은 피보험이익이라는 관념이 확립되었다. 동시에 피보험이익의 의의 또는 본질에 대한 해석 상 변화가 초래되었고, 이 경우에 이익이란 가치, 재산 또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해석법이 나타났다.²⁶⁾

23) LCCP 201, p. 110.

24) Mark Templeman QC, *op. cit.*, p. 195.

25) 초창기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은 대부분 화물, 선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체동산뿐이었고,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소유자이익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해상보험계약 상 보험의 목적만을 지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였고, 굳이 피보험이익이란 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없었다(이원근, “영법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확장에 관한 일고찰”,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9권, 1996, p. 123).

MIA 1906의 제정 이전에 피보험이익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를 제시하는 선도적인 판례는 *Lucena v. Craufurd* 사건²⁷⁾이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²⁸⁾ 1795년 7개주 연합 네덜란드공화국(Republic of the Seven United Provinces)에 대한 프랑스의 침공으로 인하여 영국 정부는 영국 해군 및 민간 무장선에 대하여 네덜란드 선박을 공격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행정관(commissioner)을 임명 및 파견함으로써 영국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선박 및 화물을 영국 항구로 이송하기 위한 통제책임을 맡겼다. 이 사건에서 행정관들은 영국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선박 및 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포 후 영국 항구로 이송되는 도중에 멸실된 선박 및 화물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쟁점은 당해 행정관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라고 칭할 정도로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상원은 하급심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수 판사의 조언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상원은 당해 행정관이 선박 및 화물의 안전한 도착과 관련하여 단순히 이익의 기대감 이외에 확실한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판결을 주도한 Lord Eldon은 “엄격한 권리 또는 계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피보험이익이라고 칭할 수 있는 단순한 기대감 또는 희망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자를 인식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례에서 도덕적 확실성(moral certain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확실성과 기대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정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사자가 재산을 점유 또는 향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될 수 있는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가거나, 재산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도출가능한 권리가 아닌 이상, 이해관계(즉, 피보험이익)라고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²⁹⁾라고 언급하면서, 선례³⁰⁾에 기초한 논거, 즉 피보험재산의 안전과 관

26) 이원근, 상계논문, pp. 113~114 참조.

27) (1806) 2 Bos. & PNR 269, 321.

28) H. Bennett, *op. cit.*, pp. 75~76 참조.

29) (1826) 2 Bos. & Pul. (NR) 269, 321.

30) 예를 들면, *Le Cras v. Hughes* (1782) 3 Doug. 81.

련하여 확실한 이해관계보다는 낮지만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높은 수준의 이익 취득 기대감이 존재하였고, 이는 피보험이익을 충족한다는 다수 하급심판사들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Lord Eldon은 피보험이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협소하고 엄격한 의미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보험재산과 관련한 법률상 이해관계(주로, 소유권) 또는 계약 상 권리를 입증해야만 하고, 기타 경제적 손해의 발생가능성은 피보험이익의 범주에서 배제된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제정법 상 행정관의 권한의 범위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하여 확실한 점은 나포된 선박 및 화물이 영국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행정관에게 부여된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나포된 선박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국왕이 선박의 소유권을 탈취하는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단지 국왕에게 부여된 권리였다. 결과적으로 행정관은 나포된 선박과 관련하여 단순히 이익취득의 기대감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 상 보상청구권이 거절된 것이다. MIA 1906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관들은 제4조 상 보험이 도박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 이익의 취득기대감을 가졌으나, 제6조 상 실손보상계약으로서 보험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완전한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상원에 조언을 제공한 하급심 판사 중 일인이었던 Lawrence J는 실손보상계약으로서 보험계약의 성격에 근거하여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해관계”로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이해관계가 반드시 특정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와 관계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필연적으로 물수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특정 물건의 보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당해 물건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당해 물건의 존재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당해 물건의 파괴로부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특정 물건의 소유권 및 이로 인하여 창출되는 이해관계는 아주 상이할 수 있다. 즉, 가치가 우선적으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지만, 당해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에 의하여 당해 물건으로부터 초래되거나, 의존하는 일체의 편익 및 이익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³¹⁾라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 간 법률적 관계

또는 계약 상 권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발생가능성을 가진 사고(event)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보다 광범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³²⁾

그러나 역사적으로 Lord Eldon이 제시한 협소하고 엄격한 기준이 선호되었고, 이 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이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상 권리 또는 계약 상 권리의 존재가 요구되며,³³⁾ 이 기준은 MIA 1906 제5조 (2)항에 편입되었다. Lord Eldon의 판결 및 MIA 1906의 제정 결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목적이 손상되는 경우, 당해 목적물에 대한 보통법 상 또는 형평법 상 관계 및 금전적인 손해를 입증하도록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Macaura v. Northern Assurance Co. Ltd.* 사건³⁴⁾에 의하여 예증된다. 이 사건에서 사유지의 소유주였던 Macaura는 사유지의 삼림을 본인이 단독주주로 있던 회사에 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19,000파운드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명의로 회사에 양도한 목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목재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Macaura는 목재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였다. 상원은 그가 회사의 단독주주로서 또는 담보권자가 아닌 단순히 채권자로서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법률적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 목재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보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담보권자가 아닌 단순히 주주 또는 채권자의 자격으로서 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하였다.³⁵⁾

31) H. Bennett, *op. cit.*, p. 76 참조.

32) LCCP 201, p.113. 이와 관련하여 Lord Eldon이 제시한 협소한 정의는 재산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재산의 가액이 피보험이익의 척도가 되지만, Lawrence J가 제시한 광범위한 정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재산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관계를 근간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책임이익과 같은 소위 소극적인 이익까지도 피보험이익에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해석된다(이원근, 전제논문, p. 115).

33) IP 4, p. 36.

34) [1925] AC 619(Northern Ireland).

35) 이 판결에 대하여 전술한 Lawrence J가 제시한 실제적 기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는 당해 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졌고, 따라서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Kyriaki Noussia, *op. cit.*, p. 83).

2) 광범위한 정의(개념의 확대 해석)

Lucena v. Craufurd 사건에서 Lord Eldon이 주도적인 견해를 제시하였고, 피보험이익에 관한 협소하고 엄격한 정의를 채택하였으나, 이후 영국 법원은 협소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동 사건에서 Lawrence J가 제시한 “실제적 이익취득의 기대감” 기준, 즉 “이익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의 존재 여부”가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종종 채택함으로써 그 엄격성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광범위한 기준의 적용은 현행 영국의 법률을 대변한다.³⁶⁾

전술한 *Lucena v. Craufurd* 사건 및 *Macaura* 사건에서 상원이 제시한 법률 상 이해관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은 종종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영국 법원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³⁷⁾ 첫째, MIA 1906 제5조 (2)항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망라적인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례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조항 상 요구되는 ‘관계’(relation)라는 개념은 ‘이해관계’(interest)보다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특정 판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Moran Galloway & Co. v. Uzielli* 사건³⁸⁾에서 선박에 대한 채권자는 해사법원에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대물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판결되었다. 셋째, MIA 1906 제8조에서 “부분적인 이해관계”(partial interest)도 부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부수적인 이해관계의 존재가 입증되는 경우,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인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영국 법원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료가 지급된 경우 피보험이익의 부재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려는 보험자의 주장은 단지 기술적인 반대에 불과하고, 현실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다.³⁹⁾

36) LCCP 201, p. 116.

37) Kyriaki Noussia, *op. cit.*, p. 83.

38) [1905] 2 KB 555.

39) 한창희, “해상적하보험상의 피보험이익”, 법학논총 제28집 제2호, 2011. 6, p. 66.

한편 *Feasy* 사건⁴⁰⁾에서 Waller LJ는 “피보험재산에 대한 보통법 또는 형평법 상 이해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도 피보험이익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Waller LJ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과거의 선례들을 분석한 후 피보험이익으로 분류되는 이해관계를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첫째,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통법 또는 형평법 상 권리를 갖는 경우, 둘째,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셋째,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나, 보험목적물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광범위한 정의이며, *Lucena* 사건에서 Lawrence J가 제시한 견해와 유사한 정의이다.⁴¹⁾

Feasy 사건에 대한 판결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존재가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며, 현대 상업계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과거의 엄격한 법적 요구사항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즉,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계약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경제적 이익의 존재는 피보험이익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⁴²⁾ Waller LJ의 분석은 일부 비평가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나,⁴³⁾ *Feasy* 사건은 피보험이익의 정의에 관한 선도적인 판례로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 판례법의 입장을 대변한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국 법원은 피보험이익의 존재와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거래의 편의성 및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같은 현대 보험시장의 요구는 명백하고 잘 정립된 보통법 또는 형평법 상 관계의 부재 시에도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Feasy* 사건은 피보험이익의 요구에 관한 새로운 법원의 입장을 정립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며, 이후의 판례법에 대하여 막대한 영

40) *Feasy v. Sun Life Assurance Co. of Canada* [2003] EWCA Civ. 885, 90.

41) IP 4, p. 38.

42) Kyriaki Noussia, *op. cit.*, p. 85.

43)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 Ward LJ의 견해는 보다 전통적인 분석법을 제시한다. Ward LJ는 *Lucena* 사건 및 *Macaura* 사건에 대한 상원의 판결 상, 보험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법률상 소유관계를 갖도록 요구된다고 인식하였다.

향을 미쳤다.⁴⁴⁾

3. 피보험이익의 존재시점

영국 보험법 상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다.⁴⁵⁾ 이와 대조적으로 MIA 1906 제6조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손해발생 시에는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비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의 개시 시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하지만, 비해상보험의 경우에 영국의 법원칙은 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Clarke 교수는 “해상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시에 피보험이익을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는 손해발생 이후에 이해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원칙은 2가지 제한요건과 더불어 여타 유형의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첫째, 기타 일체 유형의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보험계약자는 이해관계를 취득하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둘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제정법 상 이해관계가 계약체결시점에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있다.⁴⁶⁾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기간 중 특정한 시점에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도 있으나, 나머지 기간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 관한 한, 피보험자의 유효한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하는 결정적인 시점은 손해발생시점이지만,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

44) Kyriaki Noussia, *op. cit.*, p. 87.

45) *Dalby v. India and London Life Assurance Co.*(1854) 15 CB 365 ; *Turnbull & Co. v. Scottish Provident Institution*(1896) 34 SLR 146.

46) M.A.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5th edn., 2006), para. 4-4.

Ⅲ.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의 문제점 및 개혁동향

1. 법원칙의 문제점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은 단순하지만, 세부내용은 복잡하고 분석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모두 법원칙을 이해하거나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Merkin 교수에 의하면, 영국 보험법 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은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인 복잡한 상태”이고,⁴⁷⁾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⁴⁸⁾ 첫째, 피보험이익에 대한 준거법으로서 판례법 및 제정법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 여전히 18세기의 제정법이 적용되고 있고, 1909년 해상보험법은 불필요한 형사범을 창출한다. 더욱이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이 1845년 사행법의 시행 및 2005년 폐기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둘째, 피보험이익에 관한 정의가 불확실하다. 피보험이익에 관한 정의는 대체로 법원의 담당이었다. 1806년 상원은 협소한 정의, 즉 보험계약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갖거나, 해당 재산과 관련한 계약으로부터 도출가능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정의를 제공하였으나,⁴⁹⁾ 그 이후 법원이 계속해서 신종보험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채택해 왔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부단하게 확대되었다.⁵⁰⁾ 보험실무계의 내부에서조차 합의된 단일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은 보험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피보험이익에 관한 논의는 전형적으로 손해보험 및 정액보험으로 양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애매모호하며, 실제로 차이를 도출하기 어렵다.

넷째, 판례법 상 인정되는 피보험이익의 정의보다 더욱 광범위한 정의가 실무계의 보험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다. 피보험이익의 범주를 확정하는 문제가 소

47) Robert Merkin, *op. cit.*, p. 78.

48) LCCP 201, p. 99.

49) *Lucena v. Craufurd* (1806) 2 Bos. & PNR 269.

50) *Moran, Galloway & Co. v. Uzielli* [1905] 2 KB 555, 563.

송에서 제기되는 경우, 법원은 피보험이익의 부재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화 하려는 판결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보험 이익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실무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이익에 관한 정의범주를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법률위원회는 법률과 실무관행 간 불일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해 불일치는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불확실성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법률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의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거래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영국 내부에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⁵¹⁾

2. 법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1)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전문가 견해

법률위원회는 IP 4에서 손해보험이 실손보상원칙에 의거한다고 지적하면서,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에 관한 요구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 즉, 실손보상원칙에 근거해 볼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어야만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손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손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실손보상원칙이 도덕적 위태 및 도박에 대한 예방수단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법률위원회는 잠정적으로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는 불필요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손보상원칙에 더하여 피보험이익의 존재요구가 추가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⁵²⁾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 간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는 피보험이익과는 달리, 실손보상원칙은 실제손해의 발생 여부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주제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이익에

51) IP 4, p. 2.

52) IP 4, para. 1.28 및 pp. 54~57 참조.

대한 요구의 존속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자면, 첫째,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며,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일부 응답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보험에 대한 정의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로이즈 시장협회는 “로이즈가 체결하는 다수의 계약은 외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채택하여 체결되고, 거의 대부분 외국 법률은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요구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를 철폐하는 것이 영국 법률에 근거한 보험계약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ABI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요건의 부재가 이방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도박하는 것과 같이 사기의 잠재가능성 및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하면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가 보험과 도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계선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⁵³⁾

둘째, ABI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가 시장의 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였고, Aviva 보험회사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가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키며, ‘효율적인 보험인수절차’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⁴⁾ 보험상품의 개발 및 매출액을 증대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보험자의 입장에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다수의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의 존재가 그러한 보험자의 욕구를 억제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보험자들은 피보험이익을 “효력이 없는 클레임을 거절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로이즈 시장협회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의 입증 요구가 제거되는 경우, 보험계약과 무관한 제3자의 보험금청구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피보험이익의 입증 요구가 사기범 및 성가신 보험금청구자에 대하여 증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보상청구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⁵⁵⁾ 한편 Royal & Sun Alliance(RSA)는 해상적하보험과 관련하여, “국제 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최종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수차례 재매각되는 경우,

53) *Ibid.*, p. 125.

54) *Ibid.*, p. 126.

55) *Ibid.*

MIA 1906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당해 거래에 관계되는 복수의 당사자에 의한 복수의 손해보상청구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MIA1906 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규정이 만족스럽게 운용된다고 언급하였다.⁵⁶⁾

넷째,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여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은 보험계약의 체결장소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보험자에게 사업승인을 부여한 관련 행정관청이 조세 및 규제적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점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의 폐지가 파괴적인 효과를 가지며, 거의 실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ABI는 “소비자 및 보험 산업에 대한 실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주의를 촉구하였고, 일부 응답자는 피보험이익의 요구가 실무적인 난점을 거의 초래하지 않았으며, 보험자에 대하여 성가신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였다.⁵⁷⁾

결과적으로 법률위원회는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정의 및 보험계약체결방식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에 관한 본질적인 법률의 개혁은 비생산적이며,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생각에 동의한다.

2) 피보험이익의 정의에 관한 전문가 견해

피보험이익의 요구가 존속되는 경우, 다음 쟁점은 판례법에 의하여 결정된 유효한 피보험이익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⁵⁸⁾ ABI는 “현재 보험자들은 고객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증권을 작성할 수 있고, 피보험이익 문제는 클레임 단계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개혁의 동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고객 또는 시장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의 정의문제는 대부분 보험자에 대

56) *Ibid.*, p. 127.

57) *Ibid.*, p. 128.

58) *Ibid.*, pp. 129~130 참조.

하여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응답자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drian Hamilton QC는 “피보험이익이 존속되어야 하는 경우, 피보험이익의 결정기준이 변화되어야만 하고, 결과적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통법 또는 형평법 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economic disadvantage)이 기준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현행 법률 상 문제점은 피보험이익에 적용되는 법원칙이 고도로 기술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법률 상 일부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영국 보험법학회(BILA)가 2002년 보고서⁵⁹⁾에서 권고한 사항을 계속해서 지지하였다. 국제 언더라이팅협회(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또한 BILA의 권고를 지지하였으며, 피보험이익의 개념과 관련하여 경제적 불이익 요소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영국 법원이 이미 이러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1806년에 Lawrence J가 제시한 보다 광범위한 기준의 도입에 동의한다.

3. 법률위원회의 개혁권고안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가 모든 유형의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제정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다만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점과 관련하여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달리 적용되는 법원칙의 개정을 제안한다. 인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이익은 계약체결 시에 존재해야 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시에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해야 한다. 또한 일방당사자가 특정단계에서 일정한 형태의 피보험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취급되어야 하고, 보험자는 보험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피보험자는 기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전술하였듯이 피보험이익에 관한 현행 영국 보험법의 입장을 토대로 영국 법률위원회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개혁권고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⁶⁰⁾ 첫째,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자가

59) BILA, *Insurance Contract Law Reform : Recommendations to the Law Commission*, A report of the sub-committee of the British Insurance Law Association, 2002. 9. 1, para. 24.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져야만 한다는 요구를 제정법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률의 투명성 및 일관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둘째,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점과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손해발생시점이 결정적인 시점으로 작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보험자는 손해와 관련하여 유효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시점에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 보험계약은 무효화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셋째, 영국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제정법 상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보험의 형태에 따라 준거법으로서 작용되는 제정법이 상이하고, 이러한 제정법 상 요구조건도 상이하다.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이익이 부재한 상태에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형사범죄라고 규정한 1909년 법률의 폐기를 권고한다. 이 법률 하에서 선의의 이해관계 없이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보험중개인 및 보험자 또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형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위원회는 이 법률이 적용된 처벌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시장의 문제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의거하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부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불필요하고 무용한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것은 명확하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이 법률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한다.

넷째, 법률위원회는 1788년 해상보험법의 폐기를 주장한다. MIA 1788에서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의 이름을 모두 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률은 사회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무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이 법률 전체의 폐기를 제안한다.

다섯째,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MIA 1906 상 규정의 존속을 제안한다. 법률위원회는 MIA 1906 제4조~제15조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동 규정들은 원활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법률위원회는 동 규정들을 현재와 동일한 상태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이익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2개의 선택안

60) LCCP 201, pp. 131~136 참조.

을 제시한다. 즉, (1) 선택안 1 :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유효한 피보험이익의 구성요소를 정의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현행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선택안 2 : MIA 1906과 마찬가지로 보통법을 일부 제정법화하는 것이다.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피보험이익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비망라적인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법원이 그 개념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V. 결 론

영국 보험법 상 피보험이익이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은 단순하지만, 세부내용은 복잡하고 분석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이다. 영국에서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은 18세기 판례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이후 다양한 제정법 및 판례법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수백 년 동안 법률의 일관성이 유지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행 법원칙을 규명하는 것은 쉬운 과업이 아니고, 법원칙과 실무관행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혼란 및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 이익균형을 달성하고, 현대 보험관행의 요구를 반영하며, 보험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보험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시키려는 목적으로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을 개혁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쟁점보고서 및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개혁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영국 법률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권고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위원회는 쟁점보고서에서 실손보상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듯 하였으나, 중간보고서에서는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의 필수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인식하고 피보험이익에 대한 요구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만 이에 관한 법률의 투명성 및 일관성이 제고될 필요성에 대해서 여전히 공감하고 있다. 둘째,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점으로서 손해발생시점이

결정적인 시점으로 작용한다고 제안한다. 셋째,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이익의 결여의 효과로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1909년 법률의 폐기를 권고한다. 법률위원회는 시장의 문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범죄자를 양산하는 법률정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법률위원회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일체의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MIA 1788의 폐기를 권고한다. 다섯째,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MIA 1906 상 다수 규정이 제정 이후에 그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당해 규정들을 현재와 동일한 상태로 존속시킬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이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2개의 선택안을 제시한다.

영국 법률위원회가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원칙의 개혁권고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원칙의 최종 개혁안이 어떠한 형태로 제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개혁의 범위는 피보험이익의 정의, 피보험이익의 존재시점, 부채의 효과 및 낡고 무용한 관련 제정법의 정비에 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시점에서 최종보고서의 발표 시점, 의회상정을 통한 입법과정 및 발효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개혁권고안은 법률위원회가 2차례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혁권고안과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향후의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이원근, “영법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확장에 관한 일고찰”,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9권, 1996.
- 한창희, “해상적하보험상의 피보험이익”, 법학논총 제28집 제2호, 2011. 6.
- Bennett, H., *The Law of Marine Insurance*, 2nd edn., Oxford, 2006
- Clarke, M.A.,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5th edn., 2006.
- Lekh-Jones, N., "The Elements of Insurance Interest in Marine Insurance Law",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Vol. 2)(ed. by R. Thomas), 2002.
- Merkin, R., "Reforming Insurance Law : Is there a Case for Reverse Transportation?", A Report for the English and Scottish Law Commissions on the Australian Experience of Insurance Law Reform, 2006.
- Noussia, Kyriaki , "Insurable Interest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 Modern Commercial Needs Versus Tradition", *Journal of Maritime Law & Commerce*, Vol. 39, No. 1(2008. 1).
- Templeman, Mark, "Insurable interest : a suitable case for treatment?", *Reforming Marine & Commercial Insurance Law*(ed. by B. Soyer), 2008.
- British Insurance Law Association, *Insurance Contract Law Reform, Recommendations to the Law Commission*, A Report of the sub-committee of the British Insurance Law Association(2002. 9. 1).
- English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Insurable Interest*, Issues Paper 4, 2008. 1. 14.
- English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Post Contract Law and Other Issues*, Consultation Paper No. 201, 2011.

ABSTRACT

A Study on Trends for Reforming the Rule of Insurable Interest in English Insurance Contract Law - Mainly on Indemnity Insurance -

Shin, Gun Hoon

For a contract of insurance to be valid, the insured needs to have an insurable interest. This means that someone taking out insurance must stand to gain a benefit from the preserv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insurance or to suffer a disadvantage should it be lost. Although the principle is simple, the detail is difficult. English Law Commission proposed some changes to provide certainty on the rule of insurable interest in LCCP 201.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examine the proposals for reforming trends in English insurance contract law.

The proposals on Law Commission in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LC proposed to retain the requirement for insurable interest because it was thought to fulfil four useful functions. Secondly, LC proposes to repeal the Marine Insurance Act 1788 and the Marine Insurance (Gambling Policies) Act 1909 to confirm that the requirement of insurable interest applies to all forms of insurance. Thirdly, LC proposes to retain the provisions on insurable interest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Finally, LC proposes to define insurable interest and thinks that full definition of insurable interest should remain flexible.

Key Words : Insurable Interest, Law Commission, English Insurance
Contract Law Reform